

|   |     |  |
|---|-----|--|
|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|     | 말 한다.  |
| 의안<br>번호  | 711 | (3)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되, 위탁기간 종료 시 등에 대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정함.(제6조 내지 제9조)  |
| 2000년 11월 일<br>보건사회위원회  |     |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<br>(전문위원 : 안석수)  |
| 1. 심사경과<br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10월 20일,<br>서울특별시장 제출<br>나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3일<br>다. 상정일자 :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<br>제2차 보건사회위원회(2000년 11월 9일 상정·의결)   |     | 가. 개요<br>○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를 단일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여<br>-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 관련시설, 노인복지 관련시설, 부랑인보호 관련시설, 아동·부녀복지 관련시설 등 총 39개 적용대상 시설을 규정하고,<br>- 부랑인 보호시설과 부랑인 보호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자격을 정하며,<br>-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임.<br>○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시설 관리 운영 위탁 사항은 '98. 4. 30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, 통합조례로서는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시설 유형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,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여성발전센터는 2000. 7. 25 제정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.<br>○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위탁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. |
| 2. 제안설명의 요지<br>(제안설명자 : 보건복지국장 정규태)<br>가. 제정이유<br>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를 「서울특별시립 공공시설 설치·운영 관련 조례 정비계획」(시 방침 600호, 6.12)에 따라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과 그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.<br>나. 주요골자<br>(1) 적용대상 시설을 정함 : 총 39개 시설(안 제3조 및 별표)<br>○ 종합사회복지관 :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1개소<br>○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: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시설<br>○ 노인복지 관련 시설 : 시립노인요양원 등 23개 시설<br>○ 부랑인보호 관련 시설 : 은평의 마을 등 2개 시설<br>○ 아동·부녀복지 관련 시설 : 아동상담소 등 5개 시설<br>(2) 이용자 자격을 정함(안 제5조)<br>○ 부랑인 보호시설(영보자애원, 은평의마을) : 시행정구역안에서 발견된 부랑인<br>○ 부랑인 보호시설 이외의 시설<br>-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자<br>※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자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|     | 나. 안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<br>○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은<br>- 이미 수탁자가 확정되었기에 또한 예산상   |

|   |  |          |     |
|---|--|----------|-----|
| <p>의 이유로 서울특별시보에만 게재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, 가급적 이면 행정의 투명성 확립차원에서 서울특별시보 뿐만 아니라 이외의 홍보매체를 반드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함이 좋겠다고 생각됨.</p> <p><b>다.안 제7조(수탁자 선정)</b></p> <p>○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,</p> <p>-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제반 수탁자 선정기준을 조례에 명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</p> <p><b>라.기타</b></p> <p>○ 이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부 협오 시설로 비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며, 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(시설관리 등)등에 대하여도 별도 이견이 없음.</p> <p><b>4. 질의 및 답변요지.</b></p> <p><b>생략</b></p> <p><b>5. 토론요지</b></p> <p>없음</p> <p><b>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</b></p> <p>미구성</p> <p><b>7. 심사결과</b></p> <p>원안가결</p> <p><b>8. 소수의견의 요지</b></p> <p>없음</p> <p><b>9. 기타 필요한 사항</b></p> <p>없음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중<br/>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|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br/>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712</td> </tr> </table> <p>2000년 11월 일<br/>보건사회위원회</p> <p><b>1. 심사경과</b></p> <p>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10월 20일,<br/>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회부일자 : 2000년 10월 23일</p> <p>다.상정일자 :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<br/>제2차 보건사회위원회(2000년<br/>11월 9일 상정·의결)</p> <p><b>2. 제안설명의 요지</b></p> <p>(제안설명자 : 보건복지국장 정규태)</p> <p>가.개정이유</p> <p>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(2000. 10. 1)에 따라 시·도 단위로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「생활보장위원회」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,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</p> <p>나.주요골자</p> <p>(1)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<br/>제명 :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 → 사회복지위원회조례</p> <p>(2)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두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.(안 제3조)</p> <p>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)<br/>-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<br/>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<br/>-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(법 제20조 제1항)</p> <p>(3)당연직 위원에 아동 및 여성보호를 관掌하는 여성정책관을 추가하고, 민간참여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이 행정(1)부시장 1인 이던 것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추가하여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, 부위원장도 보건복지국장 1인에서 여성정책관을 추가하여 2인으로 하도록 함.(안 제 4조)</p> <p>(4)위원회 개최요구권 등을 조정함.안 제7조)<br/>○ 정기회 개최시기 : 매분기 1회 → 매년 1회<br/>○ 임시회 개최 요구권 요건 추가 : 총 위</p> | 의안<br>번호 | 712 |
| 의안<br>번호  | 712  |          |     |